



2019년 6월 주요 시행법령

「은행법」 (시행일 6.12.)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고객에게 은행은 금리인하요구 권리가 있음을 알리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금융이용자의 금융편의를 도모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 6.19.)

임대사업자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임대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임차인의 주거비 마련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일 6.25.)

국가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상 손실 외에 생명 또는 신체상의 손실에 대하여도 보상을 하도록 하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하도록 하는 등 해당 손실에 대한 국민의 권리구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충실한 직무수행 및 투명한 보상금 지급절차가 되도록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일 6.25.)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의 기준을 현행 0.05퍼센트에서 0.03퍼센트로 강화하고 현행 3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던 것을 2회 음주운전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등 음주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법정형 수준,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 수준을 강화하고 운전면허 취소 시 재취득이 제한되는 기간을 연장합니다.



6

June 2019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의병의 날
2	3 음 5.1	4	5 환경의 날	6 현충일 망종	7 단오	8
9	10 6.10 민주항쟁 기념일	11	12 「은행법」	13	14	15
16	17 음 5.15	18	1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	21	22 하지
23 / 30	24	25 6.25 한국 전쟁 「경찰관 직무집 행법」 「도로교통법」	26	27	28 철도의 날	29



새 법령 소개

「은행법」

(6월 12일 시행)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회사의 신용공여 이후 신용공여를 받은 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금융이용자에게 적극 고지되지 않고 있어 채무자는 신용상태가 개선되더라도 제도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고객에게 은행은 금리인하요구 권리가 있음을 알리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금융이용자의 금융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6월 19일 시행)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업형임대사업자(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100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는 임대사업자) 중 일부가 카드사와 제휴한 '임대료 신용카드 납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나, 일반형 임대사업자(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는 임대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 납부 방식에 대한 인식 부족, 정부의 정책 미흡 등으로 인해 임대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받는 경우가 드문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결제가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임대료를 신용카드로 납부 받는 방식을 법률에 규정하고, 임대사업자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대사업자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임대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임차인의 주거비 마련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

「경찰관 직무집행법」

(6월 25일 시행)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국민이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가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생명 또는 신체상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보상의 근거가 없어 국민들이 피해보상을 받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고, 손실을 입은 국민은 위법·적법을 가리지 않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어 경찰관은 적법한 직무집행을 하고도 사비를 들여 손실을 보상하거나 이에 따른 직무집행에 대한 심리적 위축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어 왔음. 또 보상금 지급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도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가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상 손실 외에 생명 또는 신체상의 손실에 대하여도 보상을 하도록 하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하도록 하고,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보상금 지급 후 경찰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하며,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손실에 대한 국민의 권리구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충실한 직무수행 및 투명한 보상금 지급절차가 되도록 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6월 25일 시행)

【개정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처벌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가볍다는 지적이 있으며,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음주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법정형 수준,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 수준을 강화하고 운전면허 취소 시 재취득이 제한되는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의 기준을 현행 0.05퍼센트에서 0.03퍼센트로 강화함(제44조제4항).

나. 음주운전과 관련된 운전면허의 결격기간 연장(제82조제2항)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5년으로 하고, 현행 3회 이상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의 결격기간을 3년으로 하던 것을 2회 이상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로 강화함.

다. 현행 3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던 것을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함(제93조제1항제2호).

라. 음주운전의 벌칙 수준 상향(제148조의2)

- 1) 현행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불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현행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3)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019년 6월 시행법령 목록 (2019. 5. 27. 기준)

연번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번호	소관부처	시행일
1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법률	제15925호	중소벤처기업부	6. 1.
2	지뢰피해자지원에관한특별법	법률	제16359호	국방부	6. 1.
3	소송촉진등에관한특별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29768호	법무부	6. 1.
4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9324호	행정안전부	6. 5.
5	결핵예방법	법률	제15871호	보건복지부	6. 12.
6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법률	제15864호	산업통상자원부	6. 12.
7	공중위생관리법	법률	제15873호	보건복지부	6. 12.
8	관광진흥법	법률	제15860호	문화체육관광부	6. 12.
9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법률	제15937호	국가보훈처	6. 12.
10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15874호	보건복지부	6. 12.
11	국민연금법	법률	제15876호	보건복지부	6. 12.
12	국민영양관리법	법률	제15877호	보건복지부	6. 12.
1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법률	제15929호	금융위원회	6. 12.
14	긴급복지지원법	법률	제15878호	보건복지부	6. 12.
15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법률	제15879호	보건복지부	6. 12.
16	노인복지법	법률	제15880호	보건복지부	6. 12.
1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제15881호	보건복지부	6. 12.
18	보건의료기본법	법률	제15883호	보건복지부	6. 12.
19	보험업법	법률	제15931호	금융위원회	6. 12.
20	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법률	제15884호	보건복지부	6. 12.
21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15887호	보건복지부	6. 12.
22	상호저축은행법	법률	제15932호	금융위원회	6. 12.
23	서예진흥에관한법률	법률	제15861호	문화체육관광부	6. 12.
24	선원법	법률	제15914호	해양수산부	6. 12.
25	소금산업진흥법	법률	제15915호	해양수산부	6. 12.
26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법률	제15940호	식품의약품안전처	6. 12.
27	식품·의약품등의안전기술진흥법	법률	제15941호	식품의약품안전처	6. 12.
28	식품·의약품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	법률	제15942호	식품의약품안전처	6. 12.
29	식품위생법	법률	제15943호	식품의약품안전처	6. 12.
30	아동복지법	법률	제15889호	보건복지부	6. 12.
31	약사법	법률	제15891호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6. 12.
32	어촌·어항법	법률	제15917호	해양수산부	6. 12.
33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제15934호	금융위원회	6. 12.
34	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5892호	보건복지부	6. 12.
35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	법률	제15868호	산업통상자원부	6. 12.
36	은행법	법률	제15936호	금융위원회	6. 12.
37	응급의료에관한법률	법률	제15893호	보건복지부	6. 12.
38	의료기기법	법률	제15945호	식품의약품안전처	6. 12.
39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	법률	제15896호	보건복지부	6. 12.
40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법률	제15898호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6. 12.
41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	법률	제15899호	보건복지부	6. 12.
42	장사등에관한법률	법률	제15901호	보건복지부	6. 12.
43	장애인건강권및의료접근성보장에관한법률	법률	제15902호	보건복지부	6. 12.
44	장애인복지법	법률	제15904호	보건복지부	6. 12.
45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15858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6. 12.
46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법률	제15922호	중소벤처기업부	6. 12.
47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법률	제15907호	보건복지부	6. 12.
48	제약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특별법	법률	제15908호	보건복지부	6. 12.
49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법률	제15923호	산업통상자원부	6. 12.
50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법률	제15927호	중소벤처기업부	6. 12.
51	축산물위생관리법	법률	제15946호	식품의약품안전처	6. 12.
52	한의학육성법	법률	제15910호	보건복지부	6. 12.
53	해운법	법률	제15919호	해양수산부	6. 12.
54	혈액관리법	법률	제15911호	보건복지부	6. 12.
55	화장품법	법률	제15947호	식품의약품안전처	6. 12.
56	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29750호	보건복지부	6. 12.
57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9763호	식품의약품안전처	6. 12.
58	식품·의약품등의안전기술진흥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9784호	식품의약품안전처	6. 12.
59	식품·의약품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29751호	식품의약품안전처	6. 12.
60	식품위생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9785호	식품의약품안전처	6. 12.



새 법령 소개

연번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번호	소관부처	시행일
61	의료기기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9786호	식품의약품안전처	6. 12.
62	해운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9781호	해양수산부	6. 12.
63	담주변지역친환경보전및활용에관한특별법	법률	제15674호	국토교통부	6. 13.
64	도로교통법	법률	제15629호	경찰청	6. 13.
65	물관리기본법	법률	제15653호	환경부	6. 13.
66	물관리기술표준및물산업진흥에관한법률	법률	제15654호	환경부	6. 13.
67	약취방지법	법률	제15655호	환경부	6. 13.
68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법률	제15657호	환경부	6. 13.
6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법률	제15628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6. 13.
70	철도안전법	법률	제15683호	국토교통부	6. 13.
71	환경보건법	법률	제15661호	환경부	6. 13.
72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	법률	제15741호	국토교통부	6. 15.
73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5991호	국토교통부	6. 19.
74	고등교육법	법률	제15948호	교육부	6. 19.
75	공탁법	법률	제15971호	법무부	6. 19.
76	교육공무원법	법률	제15949호	교육부	6. 19.
77	교육기본법	법률	제15950호	교육부	6. 19.
78	국립대학병원설치법	법률	제15951호	교육부	6. 19.
79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	법률	제15952호	교육부	6. 19.
80	대학도서관진흥법	법률	제15953호	교육부	6. 19.
81	도로법	법률	제15997호	국토교통부	6. 19.
82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법률	제15998호	국토교통부	6. 19.
83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법률	제16000호	국토교통부	6. 19.
84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법률	제15955호	교육부	6. 19.
85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법률	제15956호	교육부	6. 19.
86	수도권정비계획법	법률	제16002호	국토교통부	6. 19.
87	양성평등기본법	법률	제15985호	여성가족부	6. 19.
88	역세권의개발및이용에관한법률	법률	제16004호	국토교통부	6. 19.
89	인문학및인문정신문화의진흥에관한법률	법률	제15957호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6. 19.
90	인성교육진흥법	법률	제15958호	교육부	6. 19.
91	지방대학및지역균형인재육성에관한법률	법률	제15959호	교육부	6. 19.
92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법률	제15960호	고용노동부, 교육부	6. 19.
93	청소년기본법	법률	제15986호	여성가족부	6. 19.
94	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5961호	교육부	6. 19.
95	특수외국어교육진흥에관한법률	법률	제15963호	교육부	6. 19.
96	학교보건법	법률	제15965호	교육부	6. 19.
97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법률	제15966호	교육부	6. 19.
98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법률	제15967호	교육부	6. 19.
99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법률	제15968호	교육부	6. 19.
100	한국사학진흥재단법	법률	제15969호	교육부	6. 19.
101	한부모가족지원법	법률	제15989호	여성가족부	6. 19.
102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29379호	대통령경호처	6. 19.
103	특수외국어교육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29766호	교육부	6. 19.
104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29767호	교육부	6. 19.
105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9777호	여성가족부	6. 19.
106	국도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29629호	국토교통부	6. 20.
107	1959년12월31일 이전에퇴직한군인의퇴직급여금지금에관한특별법	법률	제16029호	국방부	6. 25.
10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법률	제16045호	문화체육관광부	6. 25.
109	경륜·경정법	법률	제16046호	문화체육관광부	6. 25.
110	경찰관직무집행법	법률	제16036호	경찰청	6. 25.
111	공연법	법률	제16048호	문화체육관광부	6. 25.
112	과학관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법률	제16010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 25.
113	관광진흥법	법률	제16051호	문화체육관광부	6. 25.
114	광주과학기술원법	법률	제16011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 25.
115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법률	제16023호	국무조정실, 외교부	6. 25.
116	군사기밀및군사시설보호법	법률	제16030호	국방부	6. 25.
117	군인복지기금법	법률	제16032호	국방부	6. 25.
118	군인복지기본법	법률	제16033호	국방부	6. 25.
119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법률	제16069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6. 25.
120	농업기화촉진법	법률	제16071호	농림축산식품부	6. 25.
121	농업인등의농외소득활동지원에관한법률	법률	제16072호	농림축산식품부	6. 25.
122	농촌융복합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법률	제16074호	농림축산식품부	6. 25.
123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법률	제16013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 25.
12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법률	제16089호	금융위원회	6. 25.

연번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번호	소관부처	시행일
125	도로교통법	법률	제16037호	경찰청	6. 25.
126	먹는물관리법	법률	제16079호	환경부	6. 25.
127	무형문화재보호전및진흥에관한법률	법률	제16056호	문화재청	6. 25.
128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	법률	제16080호	환경부	6. 25.
129	방송법	법률	제16014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6. 25.
130	생명연구사원의확보·관리및활용에관한법률	법률	제16016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 25.
131	수도법	법률	제16082호	환경부	6. 25.
132	식생활교육지원법	법률	제16076호	농림축산식품부	6. 25.
133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	법률	제16085호	여성가족부	6. 25.
134	여성농업인육성법	법률	제16077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6. 25.
135	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6078호	보건복지부	6. 25.
136	울산과학기술원법	법률	제16018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 25.
137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법률	제16087호	방송통신위원회	6. 25.
138	인쇄문화산업진흥법	법률	제16064호	문화체육관광부	6. 25.
139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16019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6. 25.
14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법률	제16021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6. 25.
141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법률	제16042호	행정안전부	6. 25.
142	출판문화산업진흥법	법률	제16065호	문화체육관광부	6. 25.
143	한국과학기술원법	법률	제16022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 25.
144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제16084호	환경부	6. 25.
14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29782호	금융위원회	6. 25.
146	방송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9420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6. 25.
147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315호	해양수산부	6. 25.
148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법무부령	제943호	법무부	6. 29.

위 법령의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와 시행법령 웹페이지 (www.moleg.go.kr/monthlylaw)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는 새롭게 공포되거나 시행되는 법령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달력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법,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 법제처는 국민이 입법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 중인 법령안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 새령이가 선정한 이달의 입법예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http://bit.ly/2CSh0Vf>

※ 새령이가 등장하는 “6월 입법예고” 배너는 6월 3일부터 모바일 앱(App) 미세미세, SK플래닛, 티머니 등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